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10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6  |
| 1. 제정안의 배경 및 체계 .....                                                   | 6  |
|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안처분 체계 .....                                          | 9  |
| 3. 보호감호·수용 제도와 비교 .....                                                 | 13 |
| 4.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제도 .....                                              | 15 |
| 가. 해외 입법례 .....                                                         | 15 |
| 나. 제도 도입에 대한 주요쟁점 .....                                                 | 17 |
| 다. 소결 .....                                                             | 22 |
| 5. 조문별 검토 .....                                                         | 22 |
| 가. 총칙 .....                                                             | 22 |
|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및 재판 .....                                              | 27 |
| 다.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                                                   | 41 |
| 라. 보칙 및 벌칙 .....                                                        | 51 |
| 마. 부칙 .....                                                             | 54 |
| ※ 참고자료1.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br>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 | 56 |
| ※ 참고자료2.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비용추계 산정 근거 .....                                   | 58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가.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하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나이, 건강과 신체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안 제9조)

1)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2)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정거주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다.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안 제10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1개 이상을 지정거주시설 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함.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선정 후보지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보지 중 1개 이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시설로 지정하여야 함.

4)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순찰초소의 마련,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함.

라.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안 제16조)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거주지정 대상자는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 마.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안 제18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안 제19조 및 제20조)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벌칙(안 제27조)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II. 검토의견

#### 1. 제정안의 배경 및 체계

- 2020년 이후 흉악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출소<sup>1)</sup>가 계속됨에 따라 그들이 거주할 예정인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어왔고, 국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23년 1월 정부업무보고 당시 향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의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므로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 ·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sup>2)</sup>.
- 그러나, 학교 등 아동밀집구역 500미터 이내로 엄격히 거주를 제한할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는 성폭력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없게 되어<sup>3)</sup> 이들이 지방으로

---

1) ‘2020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2022년 10월 17일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가 여죄의 성폭력범죄로 재구속, 2022년 10월 31일 출소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높아져 해당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한 바 있으며, 퇴거 명도 소송도 진행 중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과 경기도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 p.1.

2) [보도자료]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2023.1.26.

3) ‘서울시내 미성년자 교육시설 중 83%가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해 위치해 있다.’ 시사저널, 2023.1.6.

물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 도입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부족해 이들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하여<sup>4)</sup>, 이에 따른 재범 위험성 증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하고,<sup>5)</sup> 제21대 국회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6166호, 정부제출)을 제출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 제정안은 제21대 국회의 정부 제출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①목적(안 제1조), ②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정의 등 및 국가 등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③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④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방식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⑤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⑥보칙(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⑦거주지 지정명령 위반시 벌칙(안 제27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4) 윤정숙 등,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pp.50.~51.

5) [보도자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2023.10.24.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39호)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175호)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안처분 체계

-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12조제1항<sup>6)</sup>은 범죄에 대한 제재·재범방지 수단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명시하고 있음.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장래에 범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형벌을 보충하는 제도로, 자유박탈적인 시설 내 보안처분과 자유의 박탈이 아닌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인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성폭력범죄자에게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행해지고 있으며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있음.

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도 재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시설 내 보호처분인 치료감호제도<sup>7)</sup>나 도입 논의가 있었던 보호수용제도 보다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제도임.

---

6)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7)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보안처분과 거주지 지정명령 비교>

| 구분     | 수감·이수 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거주지 지정명령                                                          |
|--------|------------------------------------------------|--------------------------------------------------------|--------------------------------------------------------------------|---------------------------------------------------------------------------|-------------------------------------------------------------------|
| 근거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
| 대상 성범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 <sup>8)</sup>               |                                                        |                                                                    |                                                                           | 전자장치부착법의 성범죄와 동일                                                  |
|        | 형법상 강도강간(미수범 포함)                               |                                                        | 형법상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미수범 포함)                                           |                                                                           |                                                                   |
|        | 성폭력처벌법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미수범 <sup>9)</sup> |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미수범                     |                                                                   |
|        | 형법상 기타 성관련 범죄 <sup>10)</sup>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sup>11)</sup>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                                                                           |                                                                   |
|        | 위의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성범죄 <sup>12)</sup>   |                                                        |                                                                    |                                                                           |                                                                   |
| 절차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병과 | 법원이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부과(즉, 성폭력범죄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아님) |
| 기간     | 500시간의 범위                                      | 신상정보공개·고지: 30년~10년 (원인범죄의 선고형에 따름)<br><br>취업제한: 10년 이내 | 15년의 범위                                                            | 원인범죄 법정형의 상한과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에 따라 1년~30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시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 |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의 범위 내                                                |

| 구분               | 수강·이수 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 거주지 지정명령                     |
|------------------|----------------------------------------------------------------------------------------------------------------------------------------|-----------------------------|-------------------------------------------------------------------------------------------------------------------------------------------------------------------------|----------------------------------------------------------------------------------------------------------------------------------------------------------------------------------------------------------------------|------------------------------|
| 보호 관찰 병과         | 형 집행유예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병과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병과 가능 | 치료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
| 대상자 준수 사항<br>13) |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른 것<br>2. 주거를 이전 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br>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sup>14)</sup> 의 특별준수사항 |                             |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제3호의 준수사항<br>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br>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br>4.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br>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br>2의2. 주거지역의 제한<br>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br>4.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br>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br>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과 동일한 준수사항 부과 |
| 전담 보호 관찰         | -                                                                                                                                      | -                           | 집행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 대상자 1명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가능        |

- 8)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안처분은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외
- 9) 성충동약물치료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모두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9조(강간등 살인·치사)까지의 미수범만 포함
- 10)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및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범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간음 등), 제9조부터 제15조까지(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및 제15조의2의(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3)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받게되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제32조제3항 각호의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제39조(준용) ①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 보호감호·수용 제도와의 비교

- 구 「사회보호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등에 이들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는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sup>15)</sup>한 바 있음. 이러한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판이 지속되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2005년 폐지된 바 있음.

제21대 국회에는 보호감호 제도와 유사하게 살인·성폭력범죄와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세 건의 보호수용법안<sup>16)</sup>이 발의된 바

---

15) 구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保護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②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③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보호수용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3953호), 「보호수용법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225호), 「보호수용법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800호)

참고로 19대 국회에서 「보호수용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914648호), 20대 국회에서 「보호수용법안」(윤상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2526호)이 제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보호수용제도는 성폭력범죄 이외에 살인범죄를 추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 및 휴가·외출이 허용되는 등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생활 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허용되지만 대상자들이 사회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과 차이가 있음.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의 한 형태로 국가가 특정시설내 거주를 강제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게 되므로 결국 사회 내에서 일종의 ‘구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인 보호감호의 부활이나 보호수용의 우회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있음<sup>17)</sup>.

- 법원행정처는 ‘거주지 지정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지정된 시설에 수용하고, 1일 이상의 외출 등을 통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현재 제정안은 거주시설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 수준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

17) 배소연,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4., p. 17.

과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과잉 처벌이라는 사회여론 등에 영향을 받아 2005년 8월 폐지된 바 있는데, 동 제도가 보호감호 등과 유사한 제도로 운영될 경우 위헌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4.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제도

##### 가. 해외입법례

-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제시카 런스포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플로리다의 주(州)법으로, ① 성범죄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형량을 상향하며, ③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전자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2,000~2,500피트(600~7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sup>18)</sup>임.
-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이후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도 교육시설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였으며, 미국의 일부 주는 성폭력범죄자가 정부가 승인한 장소에서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sup>19)</sup>을 두고

18) 김대근, 「‘한국형 제시카법’도입의 문제와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3. 3.

19) 네바다(NRS176A.410), 조지아(GA Code §42-8-35a.6.), 오클라호마(OK Stat §22-991av1.E. /

있음. 다만, 미국 연방차원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리카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은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음<sup>20)</sup>.

-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특정 장소를 거주지로 지정하는 해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거주지 지정 등 관련 해외 입법례>

| 구분     | 주요내용                                                                                                                                                                                                                                    |
|--------|-----------------------------------------------------------------------------------------------------------------------------------------------------------------------------------------------------------------------------------------|
| 미국(연방)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자 또는 가석방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거주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br>[연방형법 제3563조(b)(13), 제3584조(d)(3)]                                                                                                                              |
| 프랑스    |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일정한 장소에 거소를 정할 것(형법 제132-45조)<br>-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에게 거소의 변경 또는 15일을 초과하는 모든 여행을 사전에 통지하고 귀소를 보고할 것(형법 제132-44조)<br>-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중죄로 15년 이상 구금형이 선고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지정 의무(형사소송법 제720-30조) |
| 영국     | -가석방자는 보호관찰관이 승인한 주거지에 상주하며, 그와 다른 주소에 며칠 동안 머무를 때에는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2015 형사사법법 가석방조건 시행령 3-(2)(e)]                                                                                                                                  |
| 독일     |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적정한 공공 수용시설 또는 적정한 기관에 거주할 것(형법 제56조c:3-2)<br>-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주거지,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말 것(형법 제68조b)                                                                                 |
| 오스트리아  | -가석방자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특정한 장소·가정·집에 거주하게 하거나, 특정한 주거 또는 장소에서 피할 것을 선고할 수 있음 (형법 제51조-2)                                                                                                                                                       |

자료 : 법무부

<sup>20)</sup> §515-aC.), 사우스캐롤라이나(SC Code §24-21-430), 유타(UT Code §77-18-105(6)(a)), 출처 : 법무부

## 나. 제도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시설로 지정하는 정책은 미국의 거주지제한 정책 및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호감호·수용제도 등과 다른 측면의 형사정책적 제도로 그 도입을 둘러싸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 제14조<sup>21)</sup>가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함<sup>22)</sup>.

국가 등이 운영하는 특정시설로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의 제정안은 개인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고, 특정시설 내에서 거주를 강제하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 대상 범죄자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범죄

21)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2) 헌법재판소 1996. 6. 26. 96헌마20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위험 감소의 이익은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거주지 지정 정책이 가져오는 공익적 효과가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보다 클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sup>23)</sup>이 존재함.

반면, 기본권 제한 입법의 경우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해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욱 커야 하는데 범죄예방효과의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주지 지정 정책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으며<sup>24)</sup>,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거주에 대한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의견<sup>25)</sup>도 존재함.

-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지정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의 중복성과 효과성 측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자감독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기존의 제도로도 이미 충분히

---

23) 윤정숙 등, 앞의 책, p.123.

24) 윤정숙 등, 앞의 책, pp.100.~108., pp. 122.~124.

25) 배소연, 앞의 책, p.58.

제제조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동종재범률    | 1.70% | 1.27% | 1.40% | 0.73% | 0.91% |
| 동종재범사건   | 55    | 41    | 46    | 24    | 30    |
| 성폭력 실시사건 | 3,239 | 3,239 | 3,279 | 3,282 | 3,287 |

자료 : 법무부, 2024년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전자감독 부과대상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법원이 거주지역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등에서 규정<sup>26)</sup>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의 거주지 제한 정책 전후 성범죄 변화 분석 연구 결과 해당 정책의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들의 이동이나 활동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거주지역의 제한만으로는 정책의 범죄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sup>27)</sup>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제정안의 경우 비록 지정거주시설의 선정 절차를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27) 윤정숙 등, 앞의 책, pp.125.~127., pp. 143.~144.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주지로 지정되는 시설의 종류와 이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가족과의 거주 가능 여부 등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거주시설의 종류 등을 법에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제정안은 거주지의 크기, 위치, 가족과의 거주 가능 여부 등 거주지의 형태나 운영방식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아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들이 강제로 지정된 시설에서 거주해야 하고, 가족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는 등 침해되는 기본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 소결

- 향후 지속적으로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통제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해 사회방위를 이루

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제정안을 통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현재 존재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보안처분 외에도 제정안과 같은 보안처분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에 효과적인지, 지정거주시설의 종류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4. 조문별 검토

###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
|----------------------------------------------------------------------------------------------------------------------------------------------------------------------------------------------------------------------------------------------------------------------------------------------------------------------------------------------------------------------------------------------------------------------------------------------------------------------------------------------------------------------------------------------------------------------------------------------------------------------------------------------------------------------------------------------------------------------------------------------------------------------------------------------------------------------------------------------------------------------------------------------------------------------------------------------------------------------------------------------------------------------------------------------------------------------------------------------------------------------------------------------------------------------------------------------------------------------------------------------------------------------------------------------------------------------------------------------------------------------------------------------------------------------------------------------------------------------------|
|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li> <li>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li> </ul> </li> <li>2.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매일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거주지등”이란 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를 말한다. 다만, 일정한 거주지나 거주 예정지가 없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소지를 말한다.</li> <li>4. “거주지 지정명령”이란 법원이 제9조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li> <li>5. “지정거주시설”이란 법무부장관이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시설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li> </ol> <p>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형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의 기간 전부를 형기로 본다.</li> <li>2. 하나의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징역형의 기간을 합산한다.</li> </ol>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제정안 제2조제1항제1호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①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과, ②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08년 9월 1일 이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sup>28)</sup>을 고지 받은 사람으로 규정<sup>29)</sup>하고 있음.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개념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면 재범방지의 효과가 무력할 수 있다는 의견<sup>30)</sup>이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누범 가중을 포함하여

---

28)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되어 2008년 9월 1일 시행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이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었으나 검사가 공소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부착명령 청구를 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까지 선고받은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그 후에도 계속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5일 시행된 법률 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시행일이 2008년 6월 13일인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였음.

29) [참고자료1]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30) 이수정·신나영, 「재범 고위험군(성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p.87.

징역형 10년 이상을 받게 되는 성범죄는 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강간, 강간상해·치상 및 강간치사 등의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범죄이고,

### <징역형 10년 이상의 성범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 5년~9년  | 8년~12년  | 10년~15년   |
| 2  |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8년  | 7년~11년  | 9년~13년    |
| 3  |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청소년 대상 강간          | 4년~7년  | 6년~9년   | 8년~12년    |
| 4  |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 4년~7년  | 6년~9년   | 8년~12년    |
| 5  | 13세 미만 대상 강간                       | 6년~9년  | 8년~12년  | 11년~15년   |
| 6  |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치상         | 4년~7년  | 6년~9년   | 8년~12년    |
| 7  |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상해·치상 | 5년~8년  | 7년~11년  | 10년~14년   |
| 8  |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상해·치상     | 6년~9년  | 8년~13년  | 12년~16년   |
| 9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상해·치상        | 5년~8년  | 7년~11년  | 10년~14년   |
| 10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상해·치상        | 5년~9년  | 8년~12년  | 11년~15년   |
| 11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상해·치상          | 6년~10년 | 9년~14년  | 13년이상, 무기 |
| 12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 9년~12년 | 11년~14년 | 13년이상, 무기 |

자료 : 양형위원회, 2024 양형기준, p.437.~449.

제정안에 따른 2023년말 기준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421명이고 향후 매년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의 대상자가 출소할 예정이므로 제정안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위 설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징역형 10년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황>

| 연도    | 13세 미만 아동 대상 (A) | 성폭력범죄 3회 이상 (B) | 13세 미만 아동 대상 + 성폭력범죄 3회 이상 (C) | 소계 (A+B-C) |
|-------|------------------|-----------------|--------------------------------|------------|
| 2023년 | 103명             | 397명            | 79명                            | 421명       |
| 2024년 | 23명              | 48명             | 18명                            | 53명        |
| 2025년 | 24명              | 46명             | 16명                            | 54명        |

※ 2023년말 기준 전체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피부착자 현재원 : 2,540명

자료 : 법무부

- 제정안 제2조2항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경합범인 경우의 형기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동시적 경합범<sup>31)</sup>인 경우의 선고형 계산을 규정하고 있음.

제2호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의 선고형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C죄로 인한 형사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그 시점 전에 A, B의 죄가 있고, 그 시점 후에 D, E의 죄가 있다면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 따라 하나의 판결에서 A, B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D, E의 죄에 대하여 또 다른 형을 선고해 2개의 형이 나뉘어 선고되게 됨.

31)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경합된 자를 동시적 경합범이라 하고,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가 경합된 자를 사후적 경합범이라 함.

우리 대법원이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년 이상이면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sup>32)</sup>에서 정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sup>33)</sup>한 바 있어,

일죄로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와 한 판결에서 수죄의 형기를 합산해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기간 산정을 위한 선고형 계산에서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sup>34)</sup>하고 있음.

---

32)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및 재판(안 제4조~제12조)

### 제정안

#### 제2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및 재판

제4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나이, 건강과 신체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라 한다)이 부과되지 않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①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정안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내용·수법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의 수
  3. 재범의 위험성
  4. 직업 및 경제력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의 거리 등 주변 환경
  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8. 그 밖에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거주지 지정명령”으로, “피의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본다.
- 제7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검사는 제5조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하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이유
  3. 지정거주시설
  4. 적용 법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의 관할로 한다.
- 제9조(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등) ①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기간(이하 “부착기간”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하 “거주지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지정거주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 제정안

이 없다.

제10조(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1개 이상을 지정거주시설 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보지 중 1개 이상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거주시설 주변 지역의 치안 강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순찰초소의 마련,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지정거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등에 따른 조치)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고지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국선번호인 등)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 1)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및 재판의 특이사항

○ 거주지 지정명령은 다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보안처분처럼 보안처분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주지 지정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과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①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 ②검사의 법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③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으로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즉, 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정 명령 청구 신청 권한이 있다는 점과 ③법원이 ‘결정’으로 명령을 부과하는 점이 다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보안처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2)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의 대상(안 제4조제1항)

- 제정안 제4조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① 가석방의 요건<sup>35)</sup>을 충족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와, 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①, ②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정안 부칙 제3조는<sup>36)</sup>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 등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35)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36) 제정안 부칙 제3조(거주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른바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① 학설상 다수 견해인 긍정설은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보안처분에 소급효를 적용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의 의의가 상실된다고 보는 반면, ② 부정설은 보안처분이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며, 독일형법이 명문으로 보안처분에 대해 재판시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근거로 들고 있음.<sup>37)</sup>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sup>38)</sup>.

37) 장진환,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2022., pp.165.~176.

3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7.24. 2008어4]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범주가 넓고 그 모습이 다양한 이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 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2014.8.28. 2011헌마28]

**<보안처분 유형별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 여부>**

| 보안처분 유형     | 결정일(사건 번호)             | 적용 여부     |
|-------------|------------------------|-----------|
| 보호감호처분      | 1989.7.14.(88헌가5)      | ○(소급효 불허) |
| 노역장유치       | 2017.10.26.(2015헌바239) | ○         |
| 사회봉사명령      | 2008.7.24.(2008어4)     | ○         |
|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 2012.12.27.(2010헌가82)  | X(소급효 허용) |
| DNA신원확인정보   | 2014.8.28.(2011헌마28)   | X         |
| 취업제한제도      | 2016.3.31.(2013헌마583)  | X         |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 2016.12.29.(2015헌바196) | X         |
| 보호관찰        | 1997.6.13.(97도703)     | X         |

○ 제정안에서의 거주지 지정명령은 특정 시설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우려<sup>39)</sup>는 있으나,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였거나 출소가 예정된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정 부분 공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칙의 적용례를 통한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9) 우리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로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 처분(1989.7.14. 88헌가5등), 노역장 유치(2017. 10.26. 2015헌바239등), 소년원 수용(2015.12.23. 2014헌마 768), 미결구금(2009.6.25. 2007헌바25), 영창처분(2020.9.24. 2017헌바157등)을 들고 있음.

### 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의 관계(안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 제정안 제4조제2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sup>40)</sup>에 따른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형 집행중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6009,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22조의2<sup>41)</sup>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치료명령에 따른 약물치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치료명령은 비록 재범예방의 효과<sup>42)</sup>가 크지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sup>43)</sup>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보안처분

---

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8,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제22조의2(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42)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월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2.

43)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가9)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함께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면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정안 제9조제2항은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대상자에 대해 치료명령 부과여부 또는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치료명령에 동의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게는 비교적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의 필요성 및 그 기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묻도록 하는 것은 치료명령을 강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4)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및 조사(안 제5조~제6조)

- 제정안 제5조는 검사가 범죄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검사의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검사가 거주지 지정 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제5조 하단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 및 치료명령의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sup>44)</sup>하고 있음.

-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및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주거상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거주지등의 거리 등 주변환경, 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거주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경우 가족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를 희망함에도 이를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sup>45)</sup>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전 가족상황

---

4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5) 지원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미국의 보안처분 법제 연구」, 2023 법무부 정책연구 용역과제,

및 주거상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특정 지역내 성범죄자 거주와 성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sup>46)</sup>가 있지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이 범죄 대상을 아동밀집지역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등과의 거리에 대한 조사도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에 앞서 조사되어야 하며,

제정안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대상자에 대해 치료명령 부과여부를 참작할 수 있어 검사의 청구시 해당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조사사항으로 규정된 ‘심리상태’가 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거주지 지정명령의 재판 형식(안 제9조제1항·제4항)

- 제정안은 거주지 지정명령이 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형식을 결정으로 하고 있음.
- 소송법 절차에 따라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와 재항고로 하여야

---

2023. p.127.

46) 윤정숙 등, 앞의 책, p.1.

하므로, 제정안은 항고·재항고의 근거와 함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여 즉시항고<sup>47)</sup>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형태로서 허용되고 재항고의 제기 기간을 7일<sup>48)</sup>로 두고 있는데, 형사법에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들은 항고·재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항고·재항고의 제기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sup>49)</sup>, 제정안도 제기 기간에 관하여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7)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8)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톱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6)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방식 등(안 제10조)

- 제정안 제10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와의 거리 등을 포함한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1개 이상을 주민대표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지정거주시설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임의사항)한 뒤 지정거주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된 후보지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후보지 중 1개 이상을 지정거주시설로 지정하도록 한 뒤, 제9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정거주시설을 선택해 해당 범죄자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갯생보호시설의 이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sup>50)</sup>임을 감안한다면 지정거주시설 선정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예상되므로 제정안과 같이 지정거주시설

50) ‘금성의집’이 뭐길래...과주시 ‘폐쇄’요구, 서울신문, 2023.4.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07500013>)

후보지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임의규정으로 할지 강행규정으로 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역주민들의 비선회시설의 설치 등 관련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사례는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있음<sup>51)</sup>.
- 한편, 제정안은 지정거주시설의 지정 방식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정거주시설의 종류, 가족과의 거주 가능 여부, 외출 제한과 관련한 사항 등 지정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고위험성폭력 범죄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51)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두고 있는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sup>52)</sup> 등을 참고하여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거주지 지정명령에서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느냐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주시설에 대한 주요한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 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 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 ⑥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안 제13조~제23조)

| 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p> <p>제13조(집행지휘) ① 거주지 지정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p> <p>제14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구금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br/>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집행한다.<br/>         ③ 보호관찰관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하 “거주지정 대상자”라 한다)의 부착명령 집행에 따른 위치추적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거주지정 대상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거주지 내부에 출입하여 거주지정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br/>         ④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거주지 지정명령”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거주지 지정기간”으로 본다.<br/>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강화)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정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거주지정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이 부과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정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6조(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① 거주지정 대상자는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거주지에 당일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② 거주지정 대상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br/>         ③ 제1항에 따른 거주지정 대상자의 허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p> |

## 제정안

결정 이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거주지 지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 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정된 거주지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법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거주지 지정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속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 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해제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거주지 지정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임시해제 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거주지 지정 대상자의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거주지 지정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 지정 대상자의 성행(性行)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부속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해제 결정 당시의 가족관계, 주거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제정안                                                                                                                                                                                                                                                                                                                                                                                                                                                                                                                                                                                                                                                               |
|-------------------------------------------------------------------------------------------------------------------------------------------------------------------------------------------------------------------------------------------------------------------------------------------------------------------------------------------------------------------------------------------------------------------------------------------------------------------------------------------------------------------------------------------------------------------------------------------------------------------------------------------------------------------|
| <p>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p> <p>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남은 기간 동안 종전에 지정된 거주지(임시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지정된 거주지를 말한다)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 기간은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종료) 거주지 지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p> <p>1.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이 경과된 때</p> <p>2.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된 때</p> <p>3.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거주지 지정기간이 경과된 때</p> <p>제23조(비용부담) ① 거주지정 대상자는 거주지 지정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1) 거주지 지정명령의 의무 이행 확보 및 벌칙(안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7조)

- 제정안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하 “거주지정 대상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거주지 내부에 출입하여 거주지정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3항),

거주지정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6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안 제27조제2호).

- 한편, 제정안은 거주지정 대상자의 거주지 거주 의무, 1일 이상 출장·여행·출국 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6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안 제27조제1호).

## 2) 거주지정 대상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제1항)

- 제정안 제15조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주지정 대상자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sup>53)</sup>에 따른 준수사항이 부과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정안이 준용하고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sup>54)</sup> 및

---

5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sup>55)</sup>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임.

### 3)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 지정(안 제15조제2항)

- 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정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전자감독 인력 1명이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제도<sup>56)</sup>로서 2019년 4월 도입되었음.

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8명    | 26명   | 30명   | 73명   | 98명   |

자료 : 법무부

- 제정안은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된 거주지정 대상자들까지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거주지정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임.

- 다만, 2023년 12월 기준 전자감독 인력의 총원이 450명이고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가 총 98명이어서 감독 인력의 약 21.8%가 일대일 전자감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과,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돼 현재 보호관찰관들의 업무부담이 과다한 점을 감안할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든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일대일 보호관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649호, 조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호

비용추계서에서 보호관찰 인력 40인을 증원할 경우 연평균 44억원의 재정이 소요<sup>57)</sup>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

#### 4) 거주지 지정명령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안 제17조~제18조)

○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정안 제6조제1항<sup>58)</sup>에 따라 검사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등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과 거주지 제한 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지정 대상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거주지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7) [참고자료2]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5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조사) ①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내용·수법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의 수
3. 재범의 위험성
4. 직업 및 경제력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거주지등과의 거리 등 주변 환경
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8. 그 밖에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법」과 「성충동 약물치료법」 모두 각각의 부착명령과 치료명령과 함께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병과하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각 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sup>59)</sup>을 두고 있고,

거주지정 대상자 또한 부착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보호관찰의 대상자에 해당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이행 확보를 위해 유사입법례의 예에 따라 제정안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거주지정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거주지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복할 수단이

---

5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없는 만큼 거주지 지정 대상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5) 거주지 지정명령 임시해제 및 종료(안 제19조~제22조)

-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 모두 법률안 제정시부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과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각 명령의 임시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대상자들에게 정상인으로서의 사회 복귀 의지를 고취하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제정안도 이러한 측면에서 임시해제에 관한 규정을 「전자장치부착법」과 거의 유사하게 두고 있음.

- 제정안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종료 사유로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 지정명령은 부착명령 기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이 부착명령 기간보다 더 길 수는 없지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0조제2호60)에 따라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

6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가 부작명령의 집행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도 함께 종료되어야 함을 감안한 규정으로 보임.

## 6) 비용부담(안 제23조)

- 각 제정안은 거주지정 대상자가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지정 대상자가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경우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 구직활동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거주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민간 갇생보호사업자가 숙식을 제공한 인원은 425명으로 2023년 말까지의 제정안에 따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421명과 그 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2024년도 예산 기준 법무부가 민간 갇생보호사업자에게 숙식제공비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액은 4억 1,300만원<sup>61)</sup>이므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거주 비용과 관련하여 위 금액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3. 삭제

4. 부작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작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61) 법무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634.

## 라. 보칙 및 벌칙(안 제24조~제27조)

| 제정안                                                                                                                                                                                                                                                                                                                                                                                                                                                                                                                                                                                                                                                                                                                 |
|---------------------------------------------------------------------------------------------------------------------------------------------------------------------------------------------------------------------------------------------------------------------------------------------------------------------------------------------------------------------------------------------------------------------------------------------------------------------------------------------------------------------------------------------------------------------------------------------------------------------------------------------------------------------------------------------------------------------|
| <p>제4장 보칙</p> <p>제24조(거주지 지정기간의 계산) ① 거주지 지정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p> <p>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주지 지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25조(거주지 지정 임시해제의 의제)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장 벌칙</p> <p>제27조(벌칙) 거주지 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을 한 때</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출입요구 또는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li> </ol> |

- 제정안은 보칙 규정을 통하여 거주지 지정기간의 계산 등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와 관련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1일 이상 출장·여행·출국 등을 한 자, 보호관찰관의 출입·점검요구 등 지시에 불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거주지 지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위와 같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은 거주지정 대상자와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거주지정 대상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전자장치부착법」<sup>62)</sup>은 피부착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의 준수사항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 위반시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각각의 보안처분 대상자에게 주거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sup>63)</sup>를 받도록 하고 있고

---

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처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이외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마. 부칙

| 안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3개월 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주시설 선정 후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제3조(거주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 제10조에 따라 지정거주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기 위해 통상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공포 후 6개월보다 길게 시행일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제정안 부칙 제3조는 재범 위험 방지 및 사회방위를 위해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였거나, 출소가 예정된 부착명령 판결 등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해 이 법의 소급적용 근거를 두기 위한 규정임.
-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보안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거주지 제한명령이 특정 시설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공익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칙의 적용례를 통한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75 |

## 참고자료1

##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입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중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중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입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입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입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입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입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입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입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작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작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입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작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작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작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작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작명령의 시효는 부작명령 고지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부작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출소예정자, 출소입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작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②제1항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2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산정 근거(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 ☐ 증원인원(40명)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임
- 직급별 연봉액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2022년 보호관찰관 직급별 평균 연봉 자료를 참고하고, 직급별 인원은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추정
    - 피부착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표 1] 증원인원에 대한 보수: 202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직급별 보수 |     |     |     |       |
|------------|--------|-----|-----|-----|-------|
|            | 6급     | 7급  | 8급  | 9급  | 총 합   |
| 1인당 연봉액(A) | 77     | 65  | 49  | 37  | -     |
| 증원인원(B)    | 8      | 11  | 11  | 10  | 40    |
| 보수(A×B)    | 616    | 717 | 541 | 374 | 2,248 |

자료: 법무부

-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금 비율, 법무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사업비 비율(6.2%, 60.2%) 및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인건비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보수    | 2,311 | 2,378 | 2,450 | 2,526 | 2,604 | 12,269 |
| 기관부담금 | 302   | 314   | 327   | 340   | 350   | 1,634  |
| 기본경비  | 142   | 147   | 151   | 156   | 161   | 756    |
| 사업비   | 1,392 | 1,433 | 1,476 | 1,522 | 1,569 | 7,391  |
| 자산취득비 | 174   | -     | -     | -     | -     | 174    |
| 합계    | 4,322 | 4,272 | 4,404 | 4,543 | 4,684 | 22,22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관 40인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2억원(연평균 4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재구성